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17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y)

2022. 12



연구기관 : 법무법인 화우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
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
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의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 법무법인 화우

총괄책임자 : 이광욱

참여연구원 : 이근우

이수경

이정훈

강석준

목 차

요약문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7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동향	10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	10
1. 개요	10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11
3.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기술	13
제2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 동향	14
1. IoT 기술 발전 동향	14
2. 클라우드 기술 발전 동향	15
3.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	17
제3절 모빌리티 산업과 위치정보의 중요성	17
1.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자동차	17
2. 자율주행 기술 발전 동향 및 모빌리티 시장 전망	18
3. 위치정보의 중요성	24
제3장 현행 위치정보법 주요 내용	26
제1절 목적	26
제2절 입법연혁	26
1. 위치정보법 제정	26
2. 위치정보법 개정 경과	30

제3절	현행 위치정보법의 규제 체계	33	
1.	사업 유형의 구분 및 진입 규제 현황	33	
2.	진입 규제 외의 규제 현황	34	
	제4절	현행 위치정보법의 개정 필요성	36
제4장 위치정보법 개정안			38
제1절	개정 방향	38	
제2절	주요 경과	38	
제3절	개정 내용	39	
1.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통합	39	
2.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통합	57	
3.	위치정보주체의 보호 방안	85	
4.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방안	97	
5.	기타 개선사항	125	
제5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1
별첨			142

표 목 차

<표 1-1> 이통3사의 UAM 사업 추진 현황	6
<표 1-2>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8
<표 3-1> 현행 위치정보법상 사업 유형별 진입규제	34
<표 3-2> 현행 위치정보법상 주요 규제	34

그 림 목 차

[그림 1-1] GPS constellation system animation	2
[그림 1-2] 궤도를 도는 GPS 위성의 개념도- NASA	2
[그림 1-3] 2022년 위치정보 산업 10대 키워드 전망 인포그래픽	3
[그림 1-4] 6G 시대 초공간 서비스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성도	5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Tipping Points & Technologies	11
[그림 2-2] 사이버-물리시스템 설명	12
[그림 2-3]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15
[그림 2-4] 세계 및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 규모	16
[그림 2-5]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과 기반기술	19
[그림 2-6]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단계	20
[그림 2-7]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단위: 억 달러)	22
[그림 2-8] 자율주행 단계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22
[그림 2-9] 자율주행 단계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23
[그림 2-10] 자율주행 단계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23
[그림 2-11]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요소	24

요 약 문

1. 제 목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등록제, 신고제, 위치정보의 수집 금지, 보호조치 의무, 누설 금지 등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석유에 비교되는 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성항법, AR, 5G,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진흥을 위해 위치정보법의 보호 위주의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3. 연구내용 및 범위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신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과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제2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간 발전한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모빌리티 산업과 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제3장에서는 현행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제4장에서는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개념 통합,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의 구분 삭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위치정보의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법의 전부개정안 내용을 검토햍

제5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정책적 활용과 함께 검토햍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현행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형을 ‘개인위치정보’ 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고,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 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제5조),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하도록 하며(제5조의2 및 제9조),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등록 및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임직원의 결격사유 규제(제6조), 합병, 영업양수도 규제(제7조, 제10조), 휴업 및 폐업 규제(제8조, 제11조) 등을 두어 사업자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공개 의무(제12조), 위치정보 수집 등을 위한 동의 의무(제15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제16조), 이용 목적 달성을 달성한 위치정보의 파기 의무(제23조) 등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유형 및 사업자의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각 사업자별로 의무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 및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누락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용

위치정보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된 위치정보 활용 환경에 별맞추어 더 이상 구분의 의미가 많이 없어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통합하도록 하였고, 이 통합을 통해 진입규제 등이 일원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도 하나의 사업자 개념으로 통일함

다만,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다루는 기존 사업자들을 위해 특정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위치정보주체 보호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관련 의무 신설·법정대리인 권리 명확화 등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지원·규제 완화 등 위치정보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듦

그 외에도 규제기관과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현장 일선과 부합하게 위치정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기타 사항을 수정하여 정비함

5. 정책적 활용 내용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히, 위치정보 관련 제도 개편 정책방안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여 및 환경 개선 기대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focuses on registration and report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and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es to enter the market, ban on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measures for protecting such information, ban on divulgence of such information.

As we enter the 4th industry revolution era, information, usually thought to be comparable to petroleum, is widely considered as essential resource of digital age. In order to promote newly emerging industries such as AI, Big Data, Automatic Driving, Mobility, satellite navigation, AR, 5G, IoT, and Metaverse, revision of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law, which is too much centered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is highly required.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study will progress in direction of discovering status quo of mobility industry, the industry that takes up most of newly elected government's 110 government projects, and supporting "Re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Act to Promote Mobility Industry and User Protection" project carried out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Chapter 2 covers trend of technologies developed so far as era of 4th industry revolution approaches. It especially reviews importance of mobility industry and location information.

Chapter 3 separates main contents of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reviews why revision is needed.

Chapter 4 reviews contents of full revis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focusing on integra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object location information, deletion of separating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location-based information business, ways to promot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Chapter 5 sums up studied contents, and shows contents of fully revised Location Information Act with the ways to utilize it in policy aspect.

4. Research Results

1) Main contents of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categorizes location information as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object location information.’ It also categorizes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into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 Then, it forces personal location businesses to register to KCC(Article 5), forces object location businesses and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es to report to KCC(Article 5-2, 9), burdens no obligation to object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es.

Moreover, relevant businesses are regulated by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Article 6), restriction on acquisition and merger of businesses (Article 7, 10), restrictions on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operations (Article 8, 11), etc. Obligation to disclose terms and conditions of user agreement

(Article 12), obligation to receive consent for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5), technical- managerial measures to protect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6), obligation to destruct collected location information after attaining the purpose of collecting (Article 23), etc. are regulated for protecting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ypes of location information and relevant businesses are too much fragmented setting up different obligations and contents for each type of businesses. It seems this leads to confusion of newly entering businesses. Also, some of the articles are ambiguous, and some of the contents that are required for better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seem to be missing.

2) Contents of revised Location Information Act

Following greatly changed environment of usage of location information compared to 2005 when Location Information Act was first legislated,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 are integrated as it has become almost meaningless to separate businesses into two. However, article that excludes existing businesses that handle only object location information from some of the regulations is added.

And in order to balance two aims: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and promotion of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obligations of third party who has been provided location information are added; clarification of duties of legal agents is carried out; article for providing fund for promotion of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is added; some of the regulations are mitigated.

Moreover, by collecting and accommodating opinions of authorities, relevant experts and business operators, many parts of Location Information Act have been revised to reflect reality of the field.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Fully revised Location Information Act can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Especially, it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for establishing direction of policies for improvement of relevant systems.

In addition, it can also be used as basic material for improvement of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s,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promoting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Lastly, it can support setting up mid-term and long-term policy plan for protecting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6. Expect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and contribute to promotion of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and improvement of relevant environment.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y

Chapter 3. Major Contents on Current Regula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Chapter 4. Amendment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Chapter 5. Conclus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의 제정 목적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제1조). 현행 위치정보법의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는 바로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단처럼 해석될 수 있다. 법령 내용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등록제, 신고제, 위치정보의 수집 금지, 보호조치 의무, 누설 금지 등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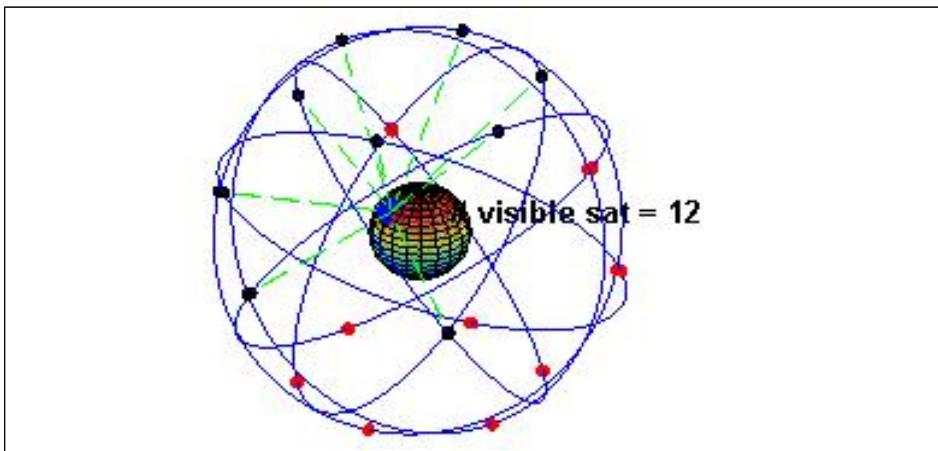
그간 채 반세기가 안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한 IT 기술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업자가 수집하는 데이터 중 위치정보 관련 정보도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되었다. 배달 관련 플랫폼이 급증하면서 위치정보의 이용은 폭발할 수 밖에 없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특히 위치측위 기술이 예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공위성을 통한 실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위주였다. 아래 그림은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진 GPS 제도 개념도인데, 지구 위에는 30개의 GPS 위성이 돌고 있다. 이중 24개의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6개의 궤도면에 분포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최소 6개의 GPS 위성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6개의 위성은 24개의 위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백업 역할을 수행한다¹⁾.

1)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GPS>; [네이버 지식백과] GPS - 전 세계가 사용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용어로 보는 IT, 서동민, IT 동아)

그러나 WI-FI, BLE, RFID 등 실내측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그 정확도 및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된 것이다.

[그림 1-1] GPS constellation system animation



출처: El pak at wiki.org

[그림 1-2] 궤도를 도는 GPS 위성의 개념도- NASA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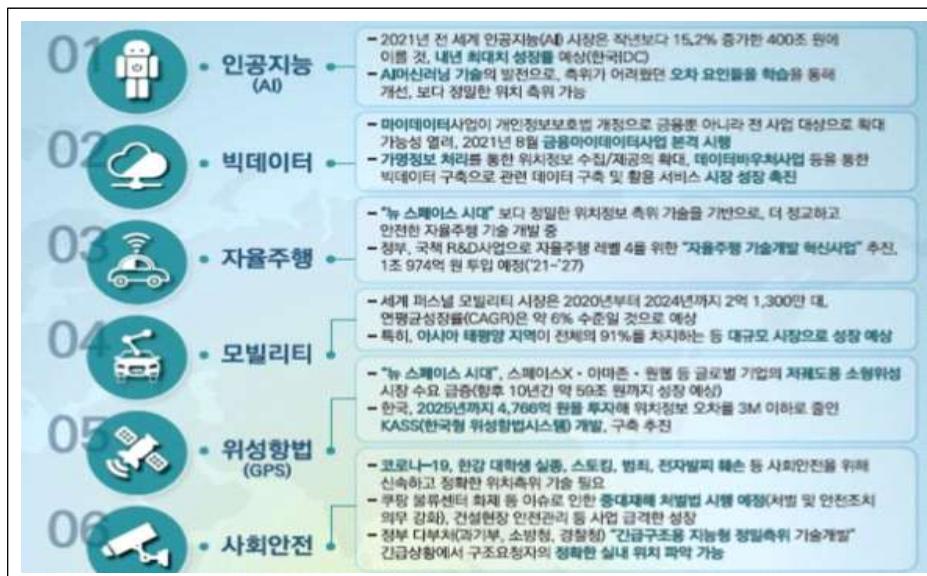


2)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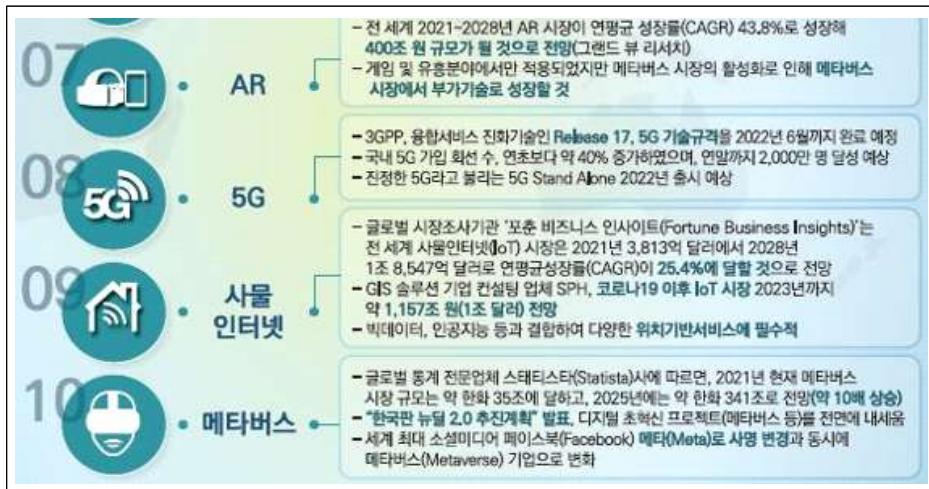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석유에 비교되는 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2월에 발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10대 키워드로 들고 있는 것은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성항법 ▲사회안전 ▲AR·VR ▲ 5G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인데, 해당 산업 분야는 근래 가장 각광받아 눈부시게 발전할 것임이 예측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해당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조 6,279억 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16.3% 성장한 3조 550 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문별 매출액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가 1조 772억 원(40.8%),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4,911억 원(18.7%),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가 4,115억 원(15.7%) 등의 순이다.³⁾

다음은 위 조사 결과에서 들고 있는 10대 키워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1-3] 2022년 위치정보 산업 10대 키워드 전망 인포그래픽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2.17.자 보도자료.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성(超連結性)이다. 초연결성은 서비스간, 디지털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으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서 두드러졌다. 통신 분야에서 모바일의 성장은 초지연성(超遲延性), 초고속의 5G와 6G이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도입시 경험하게 될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⁴⁾. 이 청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과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스마트 물류 서비스,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을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임은 자명하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세대(6G) 위성통신기술 실증계획 발표, 2021.6.19.자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d=238&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376&searchOpt=ALL&searchTxt=6G>

[그림 1-4] 6G 시대 초공간 서비스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성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센서 · 반도체 · 소프트웨어 · 통신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GM,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구글, Microsoft 등 빅테크 기업까지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쟁 중이다. 일명 “하늘택시” 관련 시장의 동향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아이마크(IMARC)그룹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 글로벌 에어택시 시장 규모가 23억2680만달러(약 3조2430억원), 연 평균 성장률(CAGR)은 19.6%로 전망했다. (중략) 세계 에어택시 선두주자 3인방인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독일의 볼로콥터(Volocopter)와 릴리움(Lilium) 모두 이르면 오는 2024년에는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였다. 그 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메리칸항공 · 버진애틀란틱 · 스페인 항공사 이베로제트 · 일본항공 · 브라질 항공사 GOL 등이 영국 에어로스페이스의 'VX4'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⁵⁾.

5) 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늘택시 뜯다] ②미국 · 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2022년9월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 관련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⁶⁾.

[표 1-1] 이통3사의 UAM 사업 추진 현황

통신사	활동 내용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국토부 주관의 UAM 민관협의체 ○ 21. 1월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과 'K-UAM 드림팀' 컨소시엄 결성 ○ 22. 9월 K-UAM 드림팀, 제주특별자치도와 'UAM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건설 등과 컨소시엄 구성 ○ 22.9월 현대차그룹과 지분 교환
L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블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GS칼텍스, 버티컬 등과 함께 컨소시엄 ○ 부산광역시와 부산 UAM 상용화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MOU 체결 <p>※ 동 MOU에는 LG유플러스 외에도 LG사이언스파크,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컨소시엄을 비롯 부산광역시, 해군작전사령부, 육군제53사단,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총 13개 사업자·지자체·군·공공기관이 참여</p>

출처: 뉴스핌 기사 내용 정리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2일,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1000126>

6) 뉴스핌, 이지민 기자, SKT-한화, KT-현대차, LGU+-GS…이통3사 UAM사업 짹짓기, 2022년 9월19일,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19000559>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모빌리티 시장의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춘 현행 위치정보 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으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도 당연히 세계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주체의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되는 이용자 정보 침해의 우려에 대응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 보호의 양 법의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를 연구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모빌리티 등의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함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현행 위치정보법 재검토하여 전부개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와 관련한 미래 동력 산업은 다양하다. 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10개 키워드에 해당하는 서비스 모두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과제 제안 논의 당시에 가장 중점을 둔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동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⁷⁾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59번), 산업자원통상부의 모빌리티 혁명(23번)-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외에 국토교통부의 미래모빌리티 육성(28번)-완전자율주행(2027년), UAM(2025년)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 및 제도 개선이 있다.

7)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2.,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

[표 1-2]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베티포트 등 (제도) 안전보행보안(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1단계는 위치정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위치정보 관련 산업 동향,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 2단계는 위치정보의 충실향 보호를 위한 연구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내 법·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위치정보 침해 시 이용자 권리 침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영역을 확인하며, 위치정보의 개념을 재정

비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3단계는 위치정보 산업의 진통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장별로 살펴보면, 위치정보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제2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그간 기술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모빌리티 산업과 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제4장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개념 통합,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구분 삭제,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방안, 위치정보의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위치정보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제 2 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동향

제 1 절 4차 산업혁명 시대

1. 개요

4차 산업혁명이란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Digital), 물리적(Physical), 생물학적(Biological) 기준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영역들이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⁸⁾.

클라우스 슈밥의 분석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변화의 속도, 변화의 범위, 시세튬적 영향의 측면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 차이가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미국의 제조업체인 General Electronic는 향후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Apple과 Google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졌던 정보 공유가 향후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 간에도 이루어지면서 정보 공유의 방식과 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류, 이동수단, 인프라, 금융, 제조, 국방 등 제반 영역에서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을 매개로 하여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모든 개체 간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제조,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8) 고민정,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기술의 이해, 배움터, 2021, 10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다. 그와 같이 초연결성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물류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이동수단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Tipping Points & Technologies



자료: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발표자료, 2017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선행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다음의 6가지로 제시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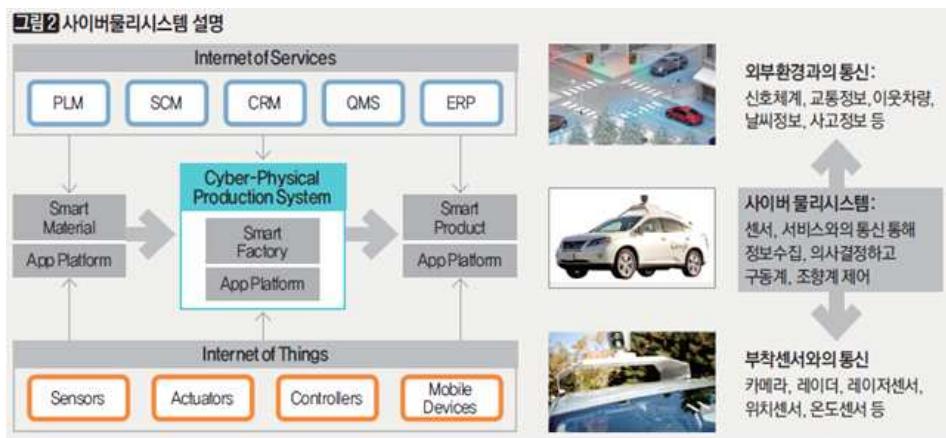
- ① 초연결성: 초소형 센서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장치, 스마트 가전, 무인자동차, 산업용 로봇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약 25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었다. 초연

9) 유재학, 시대의 변화를 담은 미래교육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읽다, 2017, 2-5면.; 배정철, 인공지능 시대의 주요 기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핵심기술, 육일문화사, 2022, 22-26면에서 재인용.

결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1, 1:多, 多:多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연결 사회는 종래의 단일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중심의 정보사회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회로 진화함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초연결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에 내재되고 지능화됨과 동시에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기술로 변화할 것이다.

②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시스템이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영역의 지식과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물리적 현실 세계에 속한 사람과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시스템, 각종 정보망이 존재하는 사이버 세계와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이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특징인데, 카메라나 레이저 센서 등의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사물과 날씨, 교통량, 내비게이션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사이버세계의 인공지능 체계가 분석하여 최적 경로를 결정한 뒤, 이를 다시 물리적인 구동장치, 조항장치에 전달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 사이버-물리시스템 설명



자료: 동아 비즈니스 리뷰, 2014년 12월호

③ 인공지능의 시대: 외부의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플랫폼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도화된 컴퓨터를 통해 개개인의 수요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을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동기화: 사람들이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동기화되는 통합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동일시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⑥ 파괴적 혁신: 연구, 개발, 마케팅, 판매, 유통 등 전 부분에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품질, 속도, 가격을 개선하여 신생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기업 역시 전통적인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조시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기술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바이오 기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물리학 기술에는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 공학 등이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있고, 생물학적 기술에는 유전 공학 등이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구분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물리학 기술: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 공학 등의 기술에 ICT를 접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한다. 센서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율 체계화된 모든 기계의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3D 프린팅은 디지털 설계도를 기반으로 3차원 물체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여러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로봇은 센서의 발달로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에 맞추어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재생가능 소재, 세척 가능 소재, 형상기억합금 등 스마트 소재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②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의 핵심 기술로서 사물인

터넷은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 즉 제품과 서비스, 장소 등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통해 AI, 드론, 로봇 등도 함께 발전될 것이고, 블록체인은 특정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술로 부각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이고, 이를 이용한 금융 거래를 할 것이며, 향후 보험금 청구, 투표 등 코드화가 가능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③ 바이오 기술: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의 바이오 기술은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합성 생물학은 DNA 데이터로 유기체를 제작할 수 있어 우리와 삶과 직결되는 심장병, 암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학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바이오 데이터와 결합되면 신약, 신종 작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¹⁰⁾.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 동향

1. IoT 기술 발전 동향

IoT(Internet on Things)란 사물들의 인터넷이라는 의미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와 같이 사물들을 연결하는 인터넷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IoT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핵심 기술로는 ① 센서 기술, ②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③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을 꼽을 수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센서 기술: 사물이 주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사물의 유무를 판별하는 광학식 센서, 온도와 습도, 거리 등을 판별하는 센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자자기, 가속도를 판별하는 센서 등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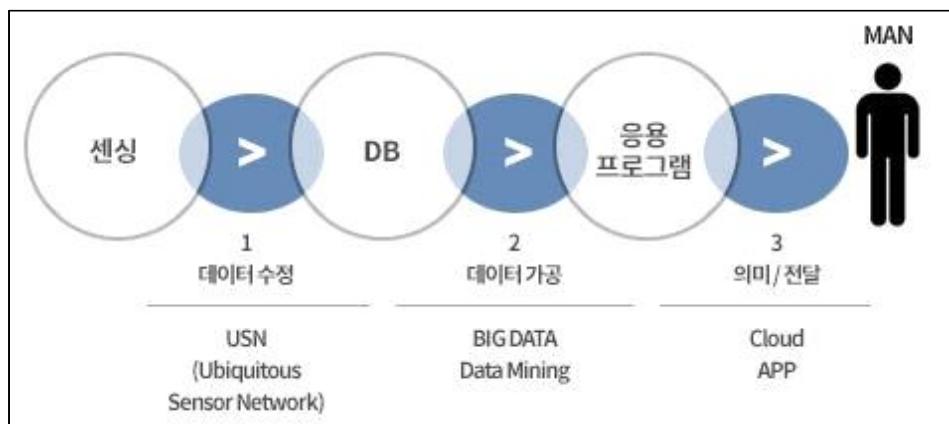
②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 비용이 충분히 저렴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의 대역폭에 따른 지불비용은

10) 고민정, 전계서, 21면.

약 1/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Wi-Fi가 보편화되고 Bluetooth 5.0, 5G 통신기술 등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사물,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크게 향상되었다.

③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은 정보를 저장, 처리,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각종 센서 등을 이용해 수집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현 시점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 외에도,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 또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에 관한 기술도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에 포함된다.

[그림 2-3]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자료: 고민정, 상계서, 122면.

2. 클라우드 기술 발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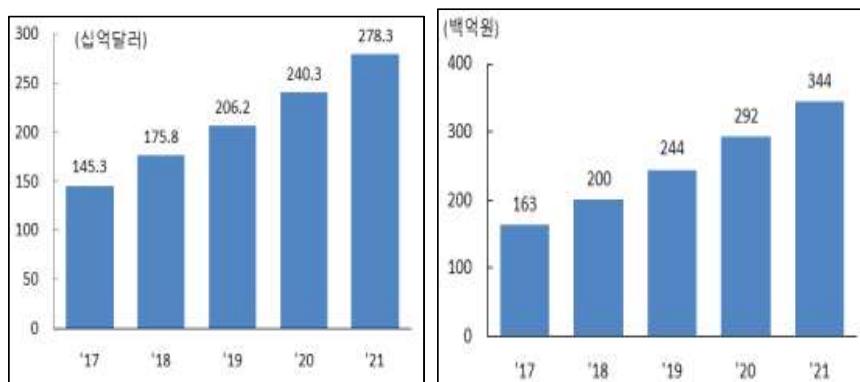
클라우드란 원격으로 호스팅되어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비디오 스트리밍, 웹메일,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로컬 또는 개인의 컴퓨터에서 파일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버에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파일과 데이터를 수신하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Google 사가 제공하는 Google Drive 서비스, 네이버가 제공하는 N Drive 서비스 등이 있다. 클라우드 기술은 근무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구성원간 협업을 증진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이나 장비의 직접 구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매년 47.6%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약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확대 및 데이터 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09년 5월 연방 CIO 협의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2010년 3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연방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미국정보는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제시하여 정책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클라우드 관련 표준을 정립하고 있다.

[그림 2-4] 세계 및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 규모



자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산은조사월보, 2019

3.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

2016년 Google Deepmind가 개발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인간 바둑기사와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의 전후방 기술의 발전 상황은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여 관련 기술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센서 및 IoT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성하는 데이터보다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인터넷 활용 인구가 증가하여 데이터가 풍부해 졌으며,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합성시켜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합성 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상용화된 AI가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Dalle-2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약 4억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신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GPT-3는 언어 생성 프로그램으로, 5천억개의 단어와 1,750억 개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성능이 급격히 향상됨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클라우드의 보편화 등 프로세서 사용 방식의 확대로 인하여 AI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화 됨에 따라, 향후에도 AI 기술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제 3 절 모빌리티 산업과 위치정보의 중요성

1.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자동차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있은 이후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변화할 사회의 모습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상들이 펼쳐졌다. 초고도화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인류의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든가, 메타버스를 위시한 가상현실 세계가 일

반화되어 사람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일상의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등의 다소 급진적인 예견도 있었으나, 관련 논의 및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정도로 현실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초기의 논의 중에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현실화된 예측이 있는데,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표되는 모빌리티에 관한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IoT 기술,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다른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군인데,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기술적으로는 수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및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화 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발전된 기술이 현실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율주행 기술 발전 동향 및 모빌리티 시장 전망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빌리티 기술은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된 상태이며, 미국의 웨이모 社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지방에서 인간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2030년 경에는 완전 무인화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Amazon 社는 2019년부터 워싱턴 주 시애틀 일부 지역 및 캘리포니아 주 어비인 지역에서 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Chick-Fil-A 社는 텍사스 주 오스틴 지역에서 시내 1마일 내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징동 社와 알리바바 社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무인 배송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기가 이동하는 동작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1) 주변 상황을 감지하는 절차, (2) 감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동작을 판단하는 절차, (3) 판단에 따라 그 결과대로 작동하는 절차이다.

[그림 2-5]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과 기반기술



자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2016

이 중 현재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와 액추에이터 기술의 완성도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다양한 센서들은 사람의 감각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폭넓은 영역에서 상황을 감지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액추에이터는 기존 자동차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현을 위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센서를 통해 감지한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차량 내부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자원만으로 인간 수준의 판단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어려운데, 만일 외부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보조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¹¹⁾.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에 특수한 신호등을 세우거나, 도로 주위에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 다른 차량, 장애물, 기후 등을 감지해 무선 단거리 전용통신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

11) 서성현, 모빌리티의 미래, 반니, 2022, 111면.

는데, 이런 정보들을 모아 분석함으로써 추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원활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¹²⁾. 주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차량과 차량 사이에 교환하고, 차량과 인프라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한층 안정화될 수 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가 보험회사, 자동차 운전자협회, 교통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고안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단계는 아래와 6단계로 같이 구분된다.

[그림 2-6]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단계



자료: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2022

- Level 0: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단계로, 사각지대 경고, 차선이탈 경고 등 경고와 간헐적 보조기능은 지원된다.
- Level 1: 자동차가 조향 지원 시스템 또는 가속/감속 지원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지만 사람이 자동차의 동적 주행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차선 중심 유지 또는 적응형 주행 제어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
- Level 2: 자동차가 조향 지원 시스템 또는 가속/감속 지원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지만 주행환경의 모니터링은 사람이 하며 안전운전 책임도 운전자가 갖는 단계이다. 차선 중심 유지

12) Lohner-Porsche electric vehicle 1900, Technisches Museum Wien, 상께서 112면에서 재인용.

와 적응형 주행제어가 동시에 적용된다.

- Level 3: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지만,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면(Driver fallback) 운전자가 적절하게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운전자에게 갖는 단계이다.
- Level 4: 주행에 대한 핵심 제어,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비상시의 대처 등을 모두 시스템이 수행하는 단계이다. 다만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자율주행 작동이 가능하며, 한정된 지역 안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Level 5: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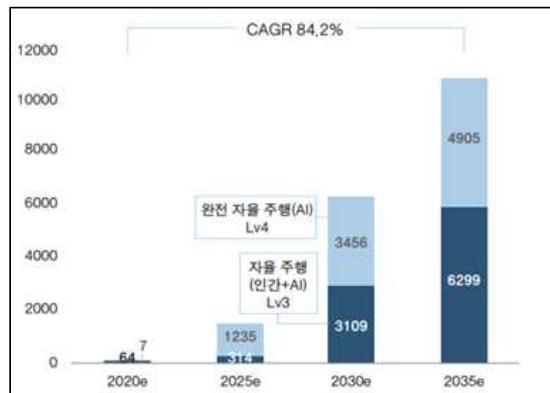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우 다양한데, 앞서 언급한 웨이모,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회사인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GM Cruise, Argo AI,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 Aptiv의 합작으로 설립된 Motional 등이 있다¹³⁾. 이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업체는 웨이모로 평가되는데, 지난 2009년 구글 내부에서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로 출발한 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레벨 4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인간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피닉스는 햇빛이 많아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수월한 기후 조건을 지녔는데, 상대적으로 운전이 쉬운 환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향후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경 상업용 분야를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는 2025년 1,549억 달러, 2030년 6,56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한국경제, “현대차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 일반도로 무인 자율 주행 ‘성공’”, 2021.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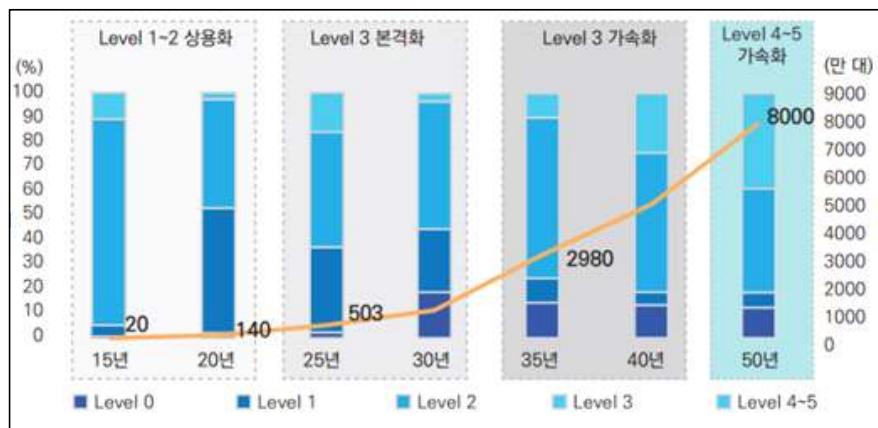
14) 서성현, 전계서, 134면.

[그림 2-7]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그림 2-8] 자율주행 단계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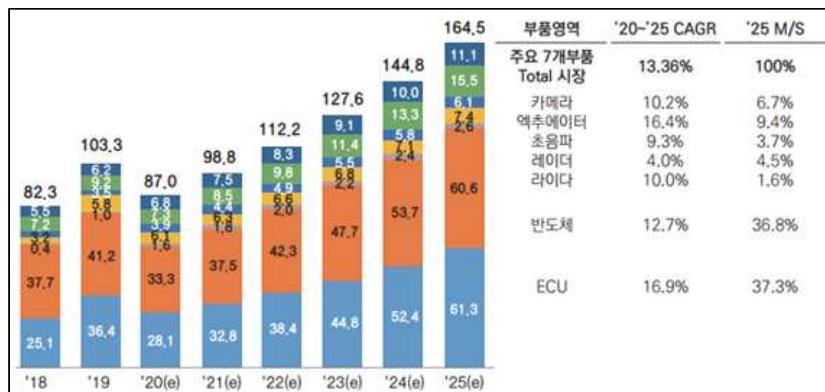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 확대로 관련 부품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데, 2019년 1,033 억 달러에서 2025년 1,64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CU(Electronic Unit Control)는 자동차 엔진, 자동변속기, ABS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인데,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지 및 제어 센서로부터 취합하는 정보량이 증가해 자율주행 부품 중 수요가 가장 큰 부품으로 2025년 시장규모는 약 6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라이다 시장은 2019년 1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25년 약 2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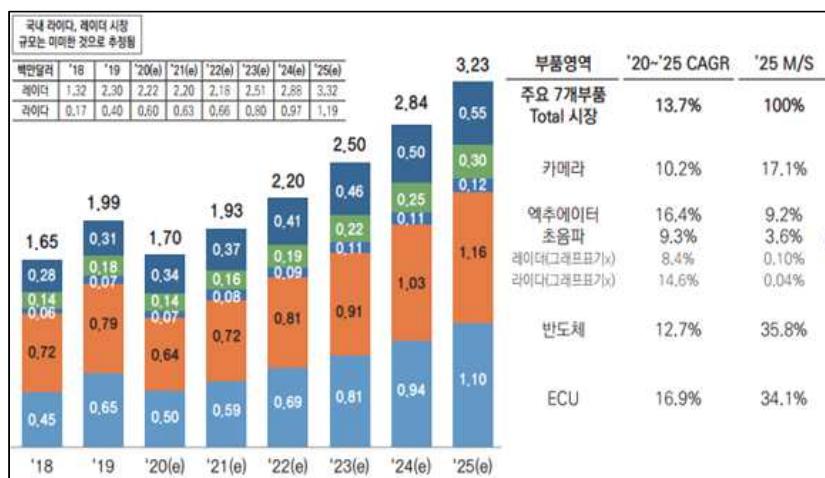
국내 자율주행 주요 부품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1.96%를 차지하여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2025년에는 3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9] 자율주행 단계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그림 2-10] 자율주행 단계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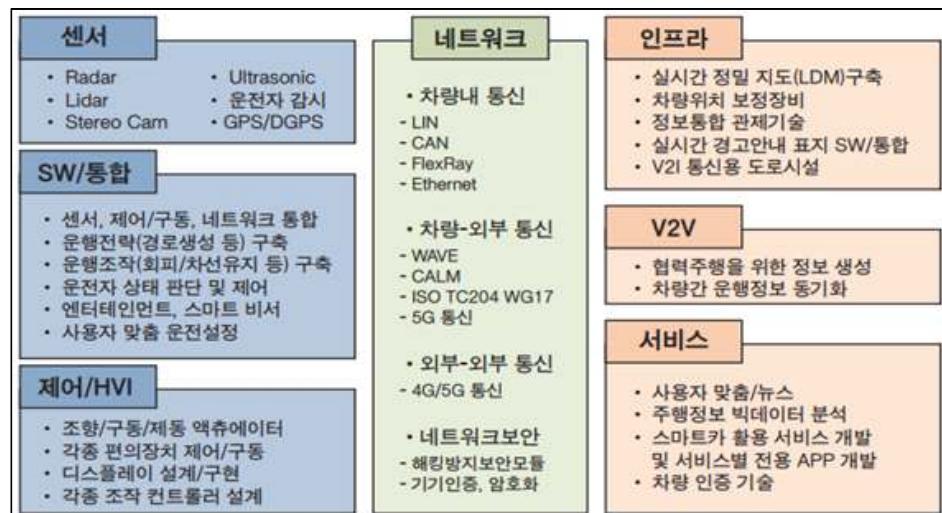
3. 위치정보의 중요성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시장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연구와 개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하여 특히 정비가 필요한 법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로봇이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 자동차, 보행자 등과 위치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필연적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위치정보는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요소로서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요소로 7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3가지 항목이 위치정보 활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그림 2-11]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요소



자료: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0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실시간 지도를 구축하고, 차량 위치를 보정하며, 실시간 관제 및

경고 안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V2V(Vehicle to Vehicle) 측면에서, 이용자 상호간에 위치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차량간 운행 정보 동기화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판단 기능과 관련된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대상과 위치정보를 활발히 교환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 주행정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인프라, V2V, 서비스 모든 측면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활용이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제3장 현행 위치정보법 주요 내용

제1절 목적

국내 현행 법제 중 위치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로는 위치정보법이 단일법으로 있으며, 이외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이 부수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은 제1조에서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일견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 역시 위치정보법의 목적인 것처럼 서술하고는 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 위치정보의 수집 금지, 보호조치의무, 누설 금지 등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위치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입법연혁

1. 위치정보법 제정

위치정보법은 2005. 1. 27. 법률 제7372호로 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행 중인데, 그 제정 이유에서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측면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추어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측면의 고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치정보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2004. 12. 6.)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전문가 4인은 아래와 같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¹⁵⁾.

○ 진술인 남광우 (군산대학교 교수)

- 위치기반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 있는 사람 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임
-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서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고 2003년 기준 SK텔레콤은 1일 약 30만건 이상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 위치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기간통신자뿐 아니라 콜택시, 카드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사업자들이 난무하게 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문제가 대두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안하였고,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위치정보 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진술인 김종남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

- 위치정보는 특정 물건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일부로 보아야 함

15) 제17대 국회 제250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2004. 12. 6.),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에서 확인 가능, 최종 접속일: 2023. 1. 14.)

- 개인위치정보가 축적된다면 그 사람의 활동범위나 활동영역,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고 단기적인 미래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임
- 위치정보가 상업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될 경우 소비자들로서는 편리함에 혼혹되어 자신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수 없어 위험성이 있음
-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위치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편리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함
- 그러한 점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고, 규제법안의 성격을 가져야 함

○ 진술인 조용혁(한국전산원 연구원)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공정 경쟁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위치정보법의 입법이 필요함
- 위치정보를 규율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법부작위로 인해 이동통신가입자 3600만 명 이상이 장기간 개인위치정보의 노출이라는 위험에 방치됨
-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현행 법제, 즉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위치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각 법의 특성상 위치정보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함
- 정부의 입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물론 사물의 위치정보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위치정보 침해행위도 처벌하는 등 위치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

○ 진술인 전웅휘(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 위치정보는 노출될 경우 개인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치정보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함
-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위치정보 관련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경

우가 많음

- 위치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체계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추가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위치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규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함. 위치정보의 특수성은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단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일관적임
- 또한, 현재 정부안은 위치정보의 삭제 청구, 정보 열람권 등 측면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후 진행된 질의 및 답변을 보아도, 법 제정자들은 위치정보의 보호 측면에 집중하였을 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심재엽 위원

남광우 교수님께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이 법 자체가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2개를 다 포함하는 법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우리가 사생활 보호 쪽에 무게를 두고 이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술인 남광우

-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법 자체의 구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형식을 보면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반적인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통신서비스하고 다르게 위치정보가 갖고 있는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위치정보의 민감성을 고려를 해서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어떠한 틀을 마련해야지만 좀더 효과적인 위치정보 보호가 될 텐데 그러한 보호를 위해서 위치정보사업의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보고요.

2. 위치정보법 개정 경과

위치정보법은 제정 이후 2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타법 개정으로 인한 문구 수정 등을 사소한 개정을 제외하고 크게 2회(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에 걸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 10. 19. 법률 제18517호로 개정되어 2022. 4. 20.부터 시행 중이다.

2015. 2. 3.자 개정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중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2018. 4. 17.자 개정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21. 10. 19.자 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것으로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위치정보법의 주요 개정 경과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각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7. 12. 21. 일부개정 (법률 제8775호)

○ 개정 이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에 갈음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신청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2015. 2. 3. 일부개정 (법률 제13203호)

○ 개정 이유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2018. 4. 17. 일부개정 (법률 제15608호)

○ 개정 이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4) 2021. 10. 19. 일부개정 (법률 제18517호)

○ 개정 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 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치정보법은 제정 이래로 현재까지 꾸준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하여 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현행 위치정보법의 규제 체계

1. 사업 유형의 구분 및 진입 규제 현황

위와 같은 경위로 개정되어 온 현행 위치정보법은, ①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고, ②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가 취급하는 위치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위치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항).

한편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위치정보법 제2조 제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위치정보법 제2조 제7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가 구분하여 규제된다.

간략히 서술하면,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중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중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각 유형의 진

입규제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현행 위치정보법상 사업 유형별 진입규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정보 (사물위치정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위치정보법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위치정보법 제5조의2)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위치정보법 제9조)	등록, 신고의무 없음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 10. 19. 법률 제18517호로 개정된 것)

2. 진입 규제 외의 규제 현황

진입규제 외에 위치정보법의 주요 규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 현행 위치정보법상 주요 규제

분류	주요 내용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6조)	미성년자, 폐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위치정보접근권한이 있는 직원이 될 수 없음
합병, 영업양수도 규제 (제7조, 제10조)	(1) 위치정보사업자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받거나 신고(사물위치정보사업자)하여야 함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 분할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휴업 및 폐업 규제 (제8조, 제11조)	<p>(1) 위치정보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관련 내용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하며,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위치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함</p> <p>(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까지 관련 휴업 또는 폐업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개인 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p>
이용약관의 공개 (제12조)	위치정보사업자 및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위치정보 수집등 금지 (제15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위치정보 보호조치 (제16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 및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 누설금지 (제17조)	위치정보사업자들과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 변조, 훼손,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위치정보의 파기 (제23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517호로 개정된 것)

제 4 절 현행 위치정보법의 개정 필요성

1.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상용화되면 자동차는 다른 대상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자율주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현행 법의 규제 체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며 사업자의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다. 한편, 모빌리티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단위에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휴업 및 폐업 규제, 합병 및 영업양수도 규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현행 위치정보법은 그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통지의 실무적 운영이 곤란하다는 등 현재 모빌리티 업계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 수 발견되는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산업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위치정보법 개정 필요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된 가제를 3가지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59번)” 이용과제는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을 과제의 수행 내용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모빌

리티 혁명(23번)" 과제 및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28번)" 과제도 '지능형 모빌리티 미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완전자율주행,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등을 과제 수행의 세부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3. 위치정보의 실효적 보호 및 모호한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위치정보법 개정 필요

한편, 현행 위치정보법은 그 해석에 있어 모호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며, 위치정보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는 자의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위치정보법 제21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UAM 상용화 등 향후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경우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은 매우 빈번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가 실효적으로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위치정보법 제25조), 이 때 현행 위치정보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중복 적용되어 14세 미만 아동 본인의 동의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아동 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위치정보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위치정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위치정보법 개정안

제 1 절 개정 방향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05년 제정되었다. 이후 스마트 기기 등의 출현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이루어지고, 그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위치정보 기반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치정보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 2 절 주요 경과

본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작업은 2022. 5.부터 위치정보법 개정 관련 연구반 발족을 통해 진행되었다. 위 연구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 그리고 그 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거쳐 위치정보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렇게 마련된 위치정보법 개정안 초안은 2022. 10.부터 연구반 외부 변호사들과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수정을 거쳤고, 아래의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3절 개정 내용

1.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통합

가. 개정 이유

현행 법률의 사업자 분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이 본격적으로 보편화·활성화되기 이전의 사업자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과거 주요 이동통신사 정도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로 활동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만 들어진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등장과 위치정보 기술발전 및 그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의 성장으로 꼭 주요 이동통신사 등이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들도 관련 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졌고, 단순히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만 하는 사업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결국 다수의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신고까지 병행하는 실정이고, 이러한 규제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견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할 수 있다. 현황 중 제공서비스에서 관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어링 서비스로 유명한 콜카나 휴비넷, 베산모바일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솔로몬엠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¹⁶⁾. 이처럼 서비스 제공 내역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상으로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따라서 사업자의 지위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사업자 구분을 폐지하여 기존의

16) 방송통신위원회_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현황,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22357/fileData.do>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 등을 신고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개정 내용

1) 정의 규정 등

우선, 위치정보사업의 정의부터 개정되었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 제2조제6호가 개정안 제2조제4호가 되면서, 위치정보사업의 정의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자에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변경되고, 현행 제2조제7호는 삭제되었다. 또한, 현행 제3조제6호의 시책강구 규정에서도 개정안 제3조제7호가 되며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 <u>위치정보사업</u> ”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 <u>위치기반서비스사업</u> ”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 <u>위치기반서비스</u> ”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 <u>위치정보시스템</u> ”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	제2조(정의) ----- -----. 4. “ <u>위치정보사업</u> ”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u><삭 제></u> 5. “ <u>위치정보시스템</u> ”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

2) 신고 및 휴·폐업 규정 등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되어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휴·폐업, 양수·합병 관련 규제도 모든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되면서 신고제로 일원화하였다. 현행 제9조, 제10조, 제11조가 모두 삭제되었고, 현행 제13조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이 삭제되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개정안 제8조제3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을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삭 제>	

<p><u>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p> <p><u>1. 상호</u></p> <p><u>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p> <p><u>3. 위치정보시스템</u></p> <p><u>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u></p>
--

<p><u>것으로 본다.</u></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u>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p>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p> <p>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p>
	<p><u>제6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p>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없다.</p> <p>③ (현행과 같음)</p>

<p>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u>위치기반서비스사업</u>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9조제1항</u>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본문에 따라 <u>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⑤ 소상공인등이 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u>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p>	<p><u>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u></p> <p><u><삭 제></u></p>

<p><u>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u></p> <p>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u>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u></p> <p><u>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u></p> <p>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p>	<p><u><삭 제></u></p> <p>② ----- -----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③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등(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은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	--

	<p>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p> <p>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p> <p>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p> <p><u>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u></p> <p><u>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p> <p>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p>
	<p>1. 제1항에 따른 휴업: 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로 한정한다)</p> <p><삭 제></p> <p>2. 제2항에 따른 폐업: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p> <p><삭 제></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u>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u></p> <p>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u>(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u></p> <p><u>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 폐업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u></p> <p><u>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u></p>	<p><삭 제></p>
--	--------------------

<p><u>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u> <u>· 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u> <u>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u> <u>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u> <u>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u> <u>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u> <u>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u> <u>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u> <u>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u> <u>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u> <u>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u> <u>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u> <u>명하여야 한다.</u></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u>으로 제5조제1항·제2항 또는</u> <u>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u> <u>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u> <u>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u> <u>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u> <u>고를 한 때</u></p> <p>2. <u>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u> <u>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u> <u>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u> <u>아니한 때</u></p> <p>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 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 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 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 니한 때</p>	<p><u>제10조(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u> <u>----- 위</u> <u>치정보사업자등이-----</u> <u>-----</u> <u>----- 사업의</u> <u>폐지-----</u> <u>-----</u> <u>-----</u> <u>-----</u> <u>-----</u> <u>----- 사업의 폐</u> <u>지를 명하여야 한다.</u></p> <p>1. ----- - <u>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단</u> <u>서 -----</u> <u>-----</u></p> <p><삭 제></p> <p>2. (현행 제4호와 같음)</p> <p><삭 제></p>
---	--

<p><u>4의2.</u>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u>등록취소</u> 또는 <u>사업의 정지를</u> 요청한 때 <u><신설></u></p> <p><u>②</u>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p>	<p>3.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u>사업의 정지를</u> 요청한 때 <u>②</u>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	---

3) 기타

현행 제18조와 제19조가 개정안 제16조로 통합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이 없어졌고,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규정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3조제1항</u>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u>개인위치정보주체</u>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u>제1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u></p> <p>-----</p> <p>-----</p> <p>-----</p> <p>-----</p> <p>-----</p> <p>-----.</p> <p>② ----- <u>제10조 제1항</u>----- <u>위치정보주체</u>-----</p> <p>-----</p> <p>----- <u>매출액</u>-----</p> <p>-----</p> <p>-----.</p>
<p><u>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p><삭 제></p>

<p><u>보유근거 및 보유기간</u></p> <p><u>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u></p> <p>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p>	<p>제16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p>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p>
--	--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p>	<p>6.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p> <p>7.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p> <p>8.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p> <p>9. ----- 위치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p> <p>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로 하거나, 위치정보주체가 제25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p> <p>1.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p> <p>2.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p> <p>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p>
---	--

<p><u>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p> <p>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p> <p>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u></p> <p>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제1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u></p> <p>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6조제1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계를 제작하여 공급

<p>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p> <p><u>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u> 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p> <p><u>제40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u>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u></p> <p>2. <u>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u></p>	<p><u>하는 자</u></p> <p>3. 그 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p> <p>②-----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 -.</p> <p><u>< 삭 제 ></u></p> <p><u>제43조(별 칙)</u> ----- ----- ----- -.</p> <p><u><삭 제></u></p> <p>1. <u>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u></p>
--	---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위치정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2005년 당시에는 아직 스마트폰 등이 등장하기 전

으로서,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현행 법률의 위치정보사업자가 수 개 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렇기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한 것인데,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이 분류의 의미가 크지 않게 되었고, 이를 법률 제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계약 관계없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사업자가 다수 있으며, 꼭 GPS 장치 등을 보유(또는 소유나 임대)하고 있어야 위치정보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도 마친 현 상황이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분류를 없애고 위치정보사업자로서 통합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도 위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자 통합을 이루어 낼지가 주로 논의되었다.

우선, 통합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별다른 진입규제 없이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이 때문에 다시 개념을 한정시키는 규정을 도입 시 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위와 같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둘을 단일화하면서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현행 법률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이 되고, 규제 완화라는 법률 개정의 주 목표에 반하므로, 개정안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신고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로서 등록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단순한 신고만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무분별한 관련 사업자 난립, 그에 따른 개인의 위치정보 남용 및 오용 우려가 커지게 되며, 이러한 남용 등은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난립으로 자격없는 사업자

들의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려 긴급구조 등에 있어 수집된 위치정보를 믿을 수 없는 사태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설득력 있는 의견이지만, 위치정보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 위치정보사업자의 난립과 남용 등 방지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개정안이 유지되었다.

이런 진입규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휴·폐업과 인수·합병 등 규정에서도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외에도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정의를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등”으로 바꾸고, 기타 규정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모두 통합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라. 입법 효과

무엇보다도, 관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절차도 마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신고 절차를 거치는 이중작업의 필요가 없어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이제는 더이상 사업에 진입하거나 휴·폐업, 인수·합병 등을 시도할 때 등록·인가 등의 규제가 사라져서 관련 사업자들의 편리함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의 위치정보법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할 것이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닌데다, 그 둘의 차이가 모호하기에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을 구분하여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과 같이 두 개념이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되면, 위치정보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숙지 난도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통합

가. 개정 이유

현행 법률은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당초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 구분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사물위치정보에 한정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차원으로 진행되었던 2018년 개정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위 항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되고, 사업자의 진입규제가 신고제로 일원화되면,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도 전부 진입규제가 같아지므로 그 둘의 구분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사물 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한 것이다.

나. 개정 내용

1) 정의 및 신고 규정 등

개인·사물위치정보의 통합으로 개인·사물위치정보 또는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규정이 전부 개정되거나 삭제되었다.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제일 처음 개인위치정보라는 표현을 쓰는 현행 제2조제2호는 삭제되었고, 현행 제2조제3호는 개정안 제2조제2호가 되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주체”로 변경되었다. 그 외에도 개정안 제3조제2호, 제5조제1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 제9조 등에서 “개인”이나 “사물”이 삭제되어 “위치정보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위치정보사업의 휴·폐업 및 양수·합병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따라 다른 규제가 부과되었지만, 개정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모두 하나로 통일되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p>2. “<u>개인위치정보</u>”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u>개인위치정보주체</u>”라 함은 개인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p> <p><u>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u> <u>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u></p> <p><u>1. 법인일 것</u></p> <p><u>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u></p> <p><u>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u></p> <p><u>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u></p> <p><u>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u>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난지 아니한 경우</u></p>	<p><삭 제></p> <p>2. “<u>위치정보주체</u>”라 함은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p> <p><삭 제></p>
--	--

<p>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 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록·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p>	<p>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위치정보사업----- ----- ----- ----- -----</p>

<p>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p> <p>1. 상호</p> <p>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p> <p>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용 주요 설비</p> <p>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 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 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u>사물위치정보 사업자</u>”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p> <p>1. 상호</p> <p>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3. 위치정보시스템</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 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야 한다.</p> <p>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 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개 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 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② 제10조제1항-----</p> <p>-----</p> <p>-----</p> <p>-----</p> <p>-----</p> <p>-----.</p> <p>③ ----- ----- “<u>위치정보사 업자</u>”-----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 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p>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 · 폐업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 · 폐업

<p><u>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u>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u>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u>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은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항에 따른 휴업: 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로 한정한다)</u> <p><u><삭 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제2항에 따른 폐업: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u> <p><u><삭 제></u></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	--

<p><u>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u> <u>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u></p>	<p><삭 제></p>
<p><u>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u> <u>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u></p>	<p><삭 제></p>
<p><u>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u> <u>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u></p>	<p><삭 제></p>
<p><u>(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u></p>

2) 그 외 기타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통합되면서 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 등 모든 조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주체’로 변경되었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되었다.

〈신·구조문 대비표〉

<p>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2.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p> <p>3.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p> <p>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p>	<p>-----.</p> <p>2. 제13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p> <p>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p> <p>② ----- 제10조 제1항----- 위치 정보주체----- ----- ----- 매 출액----- ----- -----.</p> <p>③ ----- ----- ----- ----- ----- 위치정보 사업자등----- ----- ----- -----.</p>
--	---

<p>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 ----- -----.</p>
<p><u>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u></p> <p>① 누구든지 <u>개인위치정보주체</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u>개인 위치정보</u>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29조제1항</u>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u>제29조제2항</u>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u>개인위치정보사업자</u> 및 <u>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u>(이하 “<u>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u>”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p> <p>③ (생략)</p>	<p><u>제12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u></p> <p>① ----- <u>위치정보주체</u> ----- <u>위치정보</u>를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28조</u>----- 2. <u>제28조</u>----- 3. (현행과 같음) <p>② ----- <u>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u> 위치정보사업자등이 <u>개인위치정보주체</u>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u>제15조(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u> 위치정보사업자등이 <u>위치정보주체</u>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u>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u>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p>	<p><삭 제></p>

<p><u>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p>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p>	<p>제16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 ----- 위치정보주체----- -----.</p>
<p>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신설>
<신설>
<신설>
-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치정보사업자등
- 위치정보주체 (제24조)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서비스(이하 "위치정보서비스"라 한다) 내용
- 수집·이용·제공사실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및 보유기간
-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 위치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로 하거나, 위치정보주체가 제25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p><u>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1.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p> <p>2.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p> <p>③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p> <p>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p><삭 제></p>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① <신 설>	제18조(위치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

<p>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u>개인위치정보주체</u>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u> 사실 확인자료를 <u>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u>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u>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u>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p> <p>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p> <p><u>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u>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p> <p>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p> <p>3.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p>	<p>공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 한다.</p> <p>② ----- 위치정보주체 ----- ----- 위치정보 또는 ----- ----- 제16조제1항----- ----- 수집·이용하거나 -----.</p> <p>1. 위치정보서비스 ----- ----- -----</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

<p><u>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u>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 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u>개인위치정보주체</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u>개인위치정보</u>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u>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u></p> <p>위치정보사업자등은 <u>개인위치정보</u>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u>제16조제2항</u>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u>개인위치정보</u>는 즉시</p>	<p><u>제22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u></p> <p><u>위치정보의</u></p>
<p>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u>개인위치정보</u>를 보유 할 수 있다.</p> <p>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u>개인위치정보</u>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p>	<p><u>제13조</u></p> <p><u>위치정보는</u></p> <p>-.-, -----</p> <p><u>위치정보</u></p> <p>---.</p> <p>② -----</p> <p><u>위치정보</u></p> <p>-----</p>

<p>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u>개인위치정보</u>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u>개인위치정보등</u>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u>개인위치정보</u>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p> <p>③ ----- <u>위치정보</u>-----</p> <p>-----.</p> <p>④ ----- <u>위치정보등</u>-----</p> <p>-----.</p> <p>⑤ <u>위치정보</u>-----</p> <p>-----.</p>
<p>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u>개인위치정보주체</u>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p> <p>② <u>개인위치정보주체</u>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u>개인위치정보</u>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u>개인위치정보주체</u>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3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u>위치정보주체</u>는 ----- ----- <u>제16조제1항·제3항</u>----- -----.</p> <p>② <u>위치정보주체</u>는 ----- ----- <u>위치정보</u>----- -----.</p> <p>③ <u>위치정보주체</u>는 ----- ----- -----.</p>

<p>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p> <p>2. 본인의 <u>개인위치정보</u>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p> <p>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u>개인위치정보주체</u>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u>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u>(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u>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u>로 한정한다)를 폐기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u>위치정보</u>----- ----- ----- ----- ④----- <u>위치정보주체</u>----- ----- ----- ----- <u>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u> ----- ----- ----- <u>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u> ----- -----.</p>
<p><u>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u>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u>제18조제1항</u>, <u>제19조제1항 · 제2항</u> 또는 <u>제21조</u>에 따라 <u>개인위치정보</u>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u>제18조제2항 · 제19조제5항</u> 및 <u>제24조</u>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u>개인위치정보주체</u>”는 “<u>법정대리인</u>”으로 본다.</p>	<p><u>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u> ①----- ----- ----- -- <u>제16조제1항</u> ----- ----- <u>제18조</u>--- <u>위치정보</u>--- ----- - <u>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u> ----- ----- -----.</p> <p>② <u>제16조제4항</u> 및 <u>제23조</u> ----- ----- ----- ----- ----- <u>“위치정보주체”</u>----- -----.</p>
<p><u>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p>	<p><u>제25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u> ①----- ----- ----- ----- (o) <u>법에서</u>-----</p>

<p>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u>개인위치정보</u>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 3. (생략) ② · ③ (생략) <u>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u>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u>개인위치정보주체</u>”는 “보호의무자”로 본다.</p>	----- ----- <u>위치정보</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u> ----- ----- -----. ----- “ <u>위치정보주체</u> ” -----.
<p><u>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u></p>	<p><u>제26조(손해배상) 위치정보주체는 제12조 제25조</u> ----- ----- ----- -----. ----- ----- ----- -----. </p>
<p><u>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u>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u>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u></p>	<p><u>제28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u> ① ----- ----- ----- ----- <u>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위치정보주체</u> ----- ----- ----- ----- - <u>위치정보의</u> -----. </p>

<p>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개인위치정보</u>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u>개인위치정보</u>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u>개인위치정보</u>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u>개인위치정보</u>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u>개인위치정보</u>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p>	<p>----- -----.</p> <p>② ----- ----- ----- ----- ----- <u>위치정보</u> ----- . ----- ----- ----- ----- ----- --- <u>위치정보</u> -----.</p> <p>1. ----- ----- ----- ----- ----- ----- <u>위치정보</u> 2. ----- ----- ----- <u>위치정보</u> 3. ----- ----- ----- ----- ----- ----- ----- <u>위치정보</u></p> <p>③ (현행과 같음)</p>
--	---

<p>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p> <p>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u>개인위치정보</u>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u>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u>를 수집할 수 있으며, <u>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개인위치정보</u>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u>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u>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u>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p> <p>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u>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위치정보</u> ----- ----- ----- ----- ----- <u>위치정보주체의</u> ----- - <u>위치정보를</u> ----- -- <u>위치정보주체의</u> ----- ----- -----.</p> <p>⑥ ----- ----- ----- <u>위치정보를</u> ----- ----- <u>위치정보주체</u> ----- ----- ----- -----.</p> <p>⑦ ----- ----- ----- <u>위치정보주체에게</u> ----- -----</p>
---	---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 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 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u>개인위치정보주체의</u>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u>개인위치정보</u>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u>개인 위치정보의</u>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u>개인위치정보주체가</u> 수집된 <u>개인위치정보</u>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개인위치정보</u> 수집에 대한 동의 (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p> <p>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u>개인위치정보</u>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개인위치정보주체의</u> 동의가 있</p>	<p>----- ----- ----- ----- <u>위치정보주체의</u> ----- -----.</p> <p>⑧ ----- ----- ----- ----- <u>위치정보</u> ----- --. ⑨ ----- <u>위치</u> <u>정보의</u> ----- ----- ----- <u>위치정보주체가</u> 수집 된 <u>위치정보</u>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u>위치정보</u> -----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5항에 따른 각각의 측위방식,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⑪ ----- ----- ----- <u>위치정보</u> ----- -----.</p> <p>1. <u>위치정보주체</u>-----</p>
--	--

<p>는 경우</p> <p>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u>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p>	<p>-----</p> <p>2. (현행과 같음)</p> <p><u>⑫ 제5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주체의 설정과 무관하게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받은 측위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제조·공급하여야 한다.</u></p> <p><u>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u></p> <p><u>제29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u></p> <p>① ----- ----- 제28조 ----- ----- 위치정보 를 요청 ----- ----- ----- ----- <u>위치정보를 제공하는 ----- ----- -----.</u></p> <p>② ----- ----- ----- 제28조 ----- ----- 위치정보 ----- ----- -----.</p>
--	---

<p>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제28조</u>----- -----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u>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u>제30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u> ----- <u>제28조</u>----- ----- <u>위치정보</u> 주체 ----- ----- ----- ----- ----- -----.</p>
<p><u>제31조(비용의 감면)</u>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u>제31조(비용의 감면)</u> ----- --- <u>제28조</u>----- ----- <u>제29조</u>----- ----- <u>위치정보</u> -----.</p>
<p>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u> ① ----- ----- <u>제28조</u>----- ----- <u>제29조</u>----- -- <u>위치정보</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9조(별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p>	<p><u>제42조(별칙)</u> ----- ----- -----</p>

<p>처한다.</p> <p>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p> <p>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p> <p>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p> <p>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p> <p>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p> <p>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p>	<p>-----.</p> <p>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p> <p>2. 제16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p> <p>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4. 제19조(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p>
---	---

<p><u>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p> <p>4의2. 제21조의2(제21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5. <u>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u></p> <p>6. <u>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u></p> <p>제4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u>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5. <u>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u></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4. <u>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u></p>	<p><u>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p> <p>5. <u>제28조----- 위치정보----- -----</u></p> <p>6. <u>제28조----- -위치정보주체----- ----- -----위치정보----- -----</u></p> <p>제43조(별칙) ----- ----- ----- ----- -----.</p> <p>3. <u>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4. <u>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u></p> <p>제47조(과태료) ① ----- ----- ----- 2. <u>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u></p>
--	---

<p>6. <u>제18조제3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u>개인위치정보</u>를 <u>수집</u>한 자</p> <p>6. <u>제18조제3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u>개인위치정보</u>를 <u>수집</u>한 자</p> <p><u>8의3. 제24조제4항</u>을 위반하여 <u>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u> <u>수집</u> · <u>이용</u> · <u>제공사실 확인자료</u>를 <u>과기하지 아니한</u> 자</p> <p>12. <u>제29조제6항</u>을 위반하여 <u>개인위치정보</u>의 <u>제공사실</u>을 <u>통보</u>하지 <u>아니한</u> 자</p>	<p>7. <u>제18조제1항</u>----- --<u>위치정보</u>----- <u>수집</u> · <u>이용</u> • <u>제공</u>--</p> <p>7. <u>제18조제1항</u>----- --<u>위치정보</u>----- <u>수집</u> · <u>이용</u> • <u>제공</u>--</p> <p>11. <u>제23조제4항</u>(<u>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위치정보</u>----- -----</p> <p>14. <u>제28조제6항</u>----- -----<u>위치정보</u>----- -----</p>
--	--

3) 특정 위치정보만을 다루는 사업자 배제

비록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통합되었지만,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간 규제 정도의 차이를 동일하게 두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사물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개별 규정으로 두기에는 조문의 체계 및 구조에 있어서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개정안 제48조를 신설하여 개정안 제8조제1항 · 제2항 · 제4항(위치정보사업의 휴 · 폐업), 제9조(이용약관의 공개등), 제12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6조(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제1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 제18조(위치정보 등의 수집 · 이용 · 제공의 제한 등), 제19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자의 이용 · 제공 제한, 제20조(수탁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1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2조(위치정보의 과기 등), 제23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5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8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제29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비용의 감면),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에 대해서는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게 규정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48조(적용범위) 이 법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특정한 사람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두 위치정보사업자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크게 논의되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와 사물의 위치만을 다루는 사업자의 업무 경중과 민감성 등이 달라 같은 규제를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구분을 하는 것인데 이를 단일화한다면 관련 규제가 어떤 형태를 갖출지가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기존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수준으로 맞추어버리면, 개인의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보다 그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위치정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모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기준으로 조정한다면, 이 또한 기존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된다.

그렇다면, 진입 규제는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좀 더 용이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되, 행위나 사업 관련 규제는 차등화를 두는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개정은 두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합하는 가운

데 다시 구별을 만들어내어 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진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삭제해버리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 또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이에 진입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우선은 통합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사업자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거두면서, 기존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들이 더 강한 규제를 마주할 필요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개정안 제48조를 신설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휴·폐업 등 협행 법률상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중심으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만 제재 등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률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구분은 사라졌으며, 모두 위치정보사업자로 통일되어 진입규제, 휴·폐업 규제 등에서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규제를 완화시켰고, 기존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거나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업자 진입의 경우,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등록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되고, 기존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도 협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휴·폐업의 경우,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 의무만 가지게 되었고, 기존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이제 협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라. 입법 효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통합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진입, 양수·합병, 휴·폐업 시 부과되는 규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되었다. 본래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은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양수·합병을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했으며, 휴·폐업을 위해서는 승인을 득해야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더이상 휴·폐업 시 신고도 하지 않게 개정되었다.

3. 위치정보주체의 보호 방안

가. 개정이유

위치정보법은 관련 사업자들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률임과 동시에 위치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도 하다. 위치정보산업의 촉진과 위치정보주체의 보호라는 두 목표 중 너무 한 부분만을 우선하게 되면 다른 한 부분의 의미가 퇴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치정보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임하는 데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행보다 어떤 방면에서 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할지 고민하였다. 위치정보의 활용·법정대리인·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 등 여러 방면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을 기재하고, 사업자의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등 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나. 개정 내용

1) 휴·폐업 신고 시 제출자료 추가

우선, 관련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시 기존 휴·폐업 기간 및 휴·폐업 사실 통보계획에 더하여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2)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의무 신설

그리고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개정안 제19조). 현행 법률에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서, 이용약관 명시·당사자 고지 및 동의 등 규정은 구비되어 있으나, 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p><u>제19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u>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margin-left: 2em;">1. 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em;">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p>

3) 법정대리인 권리 명확화

법정대리인의 권리도 명확화하였다(개정안 제24조). 현행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법정대리인과 위치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14세 미만 아동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된다고 보아 해당 아동의 의사결정 시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치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u>	<u>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u> ----- ----- ----- 제16조제1항 ----- ----- 제18조--- 위치정보-- ----- -----

<p>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8조제2항 · 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p>	<p>-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 ----- -----.</p> <p>② 제16조제4항 및 제23조 ----- ----- -----. “위치정보주체”----- -----.</p>
---	---

4) 위치정보 관련 분쟁 담당기관 변경

또한,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조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개정안 제27조제2항). 위치정보 관련 분쟁에 있어 현행 법률은 재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하도록 하여 체계가 이원화되어있다. 이는 위치정보주체의 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로서, 보다 위치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분쟁 담당 창구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 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p>	<p>제27조(분쟁의 조정 등) ①----- ----- 위치정보사업과 ----- ----- ----- ----- -----. ②----- ----- ----- -----.</p>

<p>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p>
---	--

5)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의무 확대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조문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12항 및 제34조제4항). 현행 법률에서는 제29조제5항에 의해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측위방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업자 간 Wi-Fi 측위 규격 등이 다르고, 일부 외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위치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일 때에 한정하여 위치기능 설정과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이 가능한 상태여서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Wi-Fi 위치정보 제공방식 표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긴급상황 시 위치정보주체의 측위기능 설정 등과 무관하게 위치정보 제공 기능 의무를 부여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 등이 개정안 제28조제5항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각각의 측위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1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신 설></p>	<p>제28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⑫ 제5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자는 위치정보주체의 설정과 무관하게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받은 측위 방식으로 위치정보</p>

<u><신 설></u>	<u>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단말기</u> <u>를 제조·공급하여야 한다.</u> <u>⑯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u> <u>른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수</u> <u>집·제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u> <u>과를 공표할 수 있다.</u>
제34조 <신 설>	<u>제34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u> <u>조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u> <u>정보사업자 또는 그 요청으로 위</u> <u>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단</u> <u>말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u> <u>는 제3항제3호 중 긴급구조와 관</u> <u>련된 표준이 고시되는 경우 이를</u> <u>준수하여야 한다.</u>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1) 휴·폐업 신고 시 제출자료 추가

개정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원래 현행과 유사하게 관련 사업자가 휴업 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 폐업 시 폐업사실의 통보계획만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련 사업자가 휴·폐업 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위치정보의 관리에 대해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휴·폐업의 기간과 해당 사실 통보계획만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아닌,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사업자가 휴·폐업 시에 해당 사실의 통보계획을 신고하도록 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휴·폐업을 거치면서 그러한 계획까지 신경을 제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므로 통보계획 신고의무를 삭제하

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사업자가 휴·폐업 시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하도록 하지 않으면, 위치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가 언제부터 이를 중단하는지 등에 대해 알 길이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 뿐만 아니라 파기사실 확인증적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사업자 관리측면에서 위치정보보호를 고려한 법 개정이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계획에서 더 나아가 증적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2)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의무 신설

현행 법률상으로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에 대한 규제만이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 등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후에 이를 제공받은 자 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규제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니 관련하여 확실히 명시하자는 논의가 있어 개정안 제19조가 신설되었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등 타 법률에서는 유사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 제19조에 대해 우려하는 별도의 견해는 없었다.

3) 법정대리인 권리 명확화

현행 제25조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관련 사업자가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위치정보주체가 되는 아동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사업자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는 것이 편

리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관행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아동의 정보를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한다 주장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사업자들의 잣은 마찰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하여 개정안 제24조가 마련되었다.

다만, 8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해당 아동의 동의 없이는 위치정보 수집이 불허되어 관련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애로사항이 커지므로 개정안 제25조와 통합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및 아동의 보호를 더 엄격히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진행되는 흐름이고, 8세 이상이면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서, 위치정보에 대한 개념이 일정 부분 잡혀있다고 보아 위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위치정보 관련 분쟁 담당기관 변경

개정안 제27조제2항의 경우, “이용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위 표현을 활용하고 있고, 현행 위치정보법에서도 별다른 개념정의 없이 위 표현을 언급하고 있어 현 개정안을 유지하였다.

5)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의무 확대

개정안 제28조제12항과 제34조제4항은 관련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다. 특히, 개정안 제34조제4항은 개정안 제28조제5항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을 받는 사업자 또는 그 요청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긴급구조와 관련된 표준이 고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 제29조제5항은 관련 사업자에게 긴급구조상황의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개정안 제34조제4항이 막연히 긴급구조와 관련된 표준이 고시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수범자가 되는 사업자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의무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고시는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긴급구조와 관련된 표준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고시에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정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비용지출을 요구하고 불만을 일으킬 수 있지만, 긴급구조의 경우 그 공익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이어서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따라 추가적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렇게 기술표준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기술규제 부과에 따른 통상협정 저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국가간 무역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164개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WTO-TBT 가 2017년 체결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기에 위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위 협정은 해외사업자들에게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이 아닌, 국내표준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 제34조제4항은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들이 고시된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협정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그러나 위 협정 제2조제2항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적정한 기술규제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제4항에서도 정당한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할 경우 국제표준 적용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개정안 제34조제4항도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정보주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 긴급구조의 이유에 한정하여 기술표준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져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러한 표준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 등을 통해 장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이는 긴급구조의 공익성에 비추어 강제성이 꼭 필요하다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위의 개정안 제28조제12항 및 제34조제4항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기능을 꼭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을 강제화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공표하게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개정안 제28조제13항).

라. 입법 효과

위 개정안의 주요한 입법효과는 위치정보주체의 보호 강화이다. 위치정보는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기 쉬운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적절한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위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관련 사업자가 휴·폐업 시 예전에 수집했던 위치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파기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업자보다 관련 보호에 소홀해지기 쉬운 휴·폐업 사업자들이 이전보다 더 경각심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한 규정이 삽입되어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순간 보호의 수준이 떨어지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 동의뿐만 아니라, 아동의 동의도 꼭 받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보호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위치정보법을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측에 관련 분쟁을 맡도록 하여 위치정보주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긴급구조의 경우에도 기술표준 등을 강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를 위해 정부기관과 관련 사업자들의 노력이 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위치정보주체의 보호와 관련하여 참고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869호)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71호)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

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반품·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방안

가. 개정이유

앞서 살펴보듯이,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도 하다. 위치정보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던 2005년 당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산업의 활성화를 너무 후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위치정보법 개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관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집중했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치정보법이 물론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치정보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할 추가

적인 개정을 하고자 하였다.

나. 개정 내용

1) 위치정보산업 진흥에 대한 전반적 지원

우선, 위치정보법의 목적인 제1조부터 이 법률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3조제1호·제8호를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개정안 제35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 ·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 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이바지하고, 위치정보산 업의 진흥을 촉진함을</u> -----.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 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 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 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 ----- ----- -----

<p>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p> <p>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 설></p> <p>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p> <p>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p> <p>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p> <p>2. 위치정보주체</p> <p>3. (현행과 같음)</p> <p>4.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및 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위치정보사업</p> <p>6. 위치정보사업</p> <p>7. 위치정보사업</p> <p>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p> <p>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p> <p>①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p>	<p>② ----- ----- ----- -----. 이 경우 재정에 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p>
---	--

2) 변경신고 의무 완화

그리고 현행 법률 제5조제2항과 제5조의2제3항은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위치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빈번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 제5조제3항제3호를 개정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이 아닌, 위치정보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용 주요 설비</p> <p>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p>	<p><u>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위치정보사업</u></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0조제1항</p>

<p>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u>사물위치정보 사업자</u>”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u>위치정보시스템</u>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 ----- -----.</p> <p>③ ----- “<u>위치정보사업자</u>”-----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위치정보사업의 종류</u>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⑤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u>신고한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u></p>
---	---

3) 관련 사업자 인적자원 부담 완화

또한, 현행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위치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또는 현행 법률 제16조제1항의 접근권한자로 지정될 수가 없는데, 위치정보사업 허가·등록 시 적용되던 규정으로,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상시 신원조회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p> <p>1. ~ 5. (생략)</p> <p>6.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p>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p>	<삭제>

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4) 제재규정 정비

현행 법률상 벌칙규정 중 형별로 제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개정안 제11조, 제42조 내지 제47조). 그러면서도 제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u>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u>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u>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u>”라 한다)의 기록·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p>제1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 ----- ----- <u>위치정보</u> <u>사업 매출액의</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과기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한 경우

3. 제19조제1항 · 제2항 ·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 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정 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재무재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3. 제16조제1항 · 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2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② ----- 제10조
제1항----- 위치

----- 매
출액-----

-----.

③ -----

----- 위치정보
사업자등 -----

-----.

<p>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④ ~ ⑧ (생략)</p> <p><u>제39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u> 2. <u>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u> 3. <u>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자</u> 3. <u>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u> 	<p>----- ----- -----.</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u>제42조(별 칙) ----- ----- ----- -----.</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u> 2. <u>제16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u> 3. <u>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
---	---

<p><u>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u></p> <p>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 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4. <u>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服務或 고지한 범위 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p> <p>4의2. 제21조의2(제21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한 자</p> <p>5. <u>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 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u></p> <p>6. <u>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 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u></p>	<p>4. <u>제19조(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위 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자</u></p> <p>5. <u>제28조----- 위치정보----- -----</u></p> <p>6. <u>제28조----- -위치정보주체----- ----- -----위치정보----- -----</u></p>
<p><u>제40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u>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 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u></p>	<p><u>제43조(별 칙) ----- ----- ----- -. <삭 제></u></p>

<u>을 한 자</u>	
<p>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u>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u>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u>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u>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u></p>	<p>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u>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u>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p> <p>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u>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u></p>
<p>제40조의2(별 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u>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44조(별 칙) 제22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u>위치정보를 -----</u>.</p>
<p>제41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u>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u>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위치정보</u></p>	<p>제45조(별 칙) -----</p> <p>-----</p> <p>-----</p> <p>--.</p> <p><삭 제></p>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신 설>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 제13조제2항(제20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

-----.

1. 제7조제1항 -----

<삭 제>

<p>3. <u>제12조제1항</u>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u>3의2.</u> <u>제12조제2항</u>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p> <p>4. <u>제15조제3항</u>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5. <u>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p> <p><u>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6. <u>제18조제3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p> <p><u>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u></p> <p>8. <u>제22조의 규정</u>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동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u>8의2. 제23조제2항</u>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9. <u>제24조제3항</u>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p>	<p>2. <u>제9조제1항</u>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3. <u>제9조제2항</u>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p> <p>4. <u>제12조</u>----- ----- -----</p> <p>5. <u>제16조제1항</u>----- ----- -----</p> <p>6. <u>제16조제2항·제3항</u>의 ----- -----<u>조치</u>를 취하지 아니하 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7. <u>제18조제1항</u>----- --<u>위치정보</u>----- <u>수집</u> · <u>이용</u> · <u>제공</u>--</p> <p><삭 제></p> <p>8. <u>제21조</u>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동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9. <u>제22조제2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u>----- -----<u>위치정보</u> ----- --</p> <p>10. <u>제23조제3항</u>----- -----</p>
---	--

<p>한 자</p> <p><u>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u></p> <p><u>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u>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u></p> <p><u>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u></p> <p><신 설></p> <p><u>17.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표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p> <p><u>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u></p> <p><u>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u></p>	<p>-----</p> <p><u>11. 제23조제4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치정보----- -----</u></p> <p><u>1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u>13. 제28조제1항----- ----- -</u></p> <p><u>14. 제28조제6항----- -----위치정보----- -----</u></p> <p><u>15. 제28조제1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요청받은 측위 방식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자</u></p> <p><u>16. (현행 제17호와 같음)</u></p> <p><u>17.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 후단----- ----- -----제출한 자</u></p> <p><u>18.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u></p>
---	---

<p>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u>기피한 자</u>(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p> <p>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 · 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p> <p>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④ 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삭제</p> <p>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p>	<p><u>기피한 자</u></p> <p>19. 제38조</p> <p>③ (현행과 같음)</p> <p>1.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p> <p>2. (현행과 같음)</p> <p>④-----(제13호-----)</p> <p><u>조문번호 정비</u></p> <p><u>조문번호 정비</u></p> <p><u>조문번호 정비</u></p> <p>⑤ 제2항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p>
---	---

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⑨ 삭제	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조문번호 정비
-------------------------	----------------------------

5) 관련 사업자의 위치정보주체 통보의무 완화

현행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거나 또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30일에 한 번 모아 통보해야 하는 점을 일부 개정하였다. 관련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 목적을 위해 개정안 제16조제2항·제3항은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시 단말기화면 등에 ‘위치정보를 OOO에게 제공 중’ 이란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과거 일정시점·기간 위치정보 제공 시에는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명칭),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최대 60일에 한 번 모아 통보하도록 하여 통보 의무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고자하거나(예: 데이팅앱, 산책경로 자랑 앱 등), 위치정보주체가 개정안 제25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p>	<p>제16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는 위치정보주체-----.</p> <p>1. 위치정보사업자등-----</p>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위치정보주체 ----- (제24조----- ----- ----- ----- ----- -----)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3. 위치정보사업자등이-----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서비스(이하 “위치정보서비스”라 한다)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 ----- 수집·이용·제공사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신 설> <신 설> <신 설>	5.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및 보유기간 6.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자 7.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8.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9. ----- 위치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 -----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 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로 하

	<p><u>거나, 위치정보주체가 제25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위치 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u>1.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u></p> <p><u>2.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u></p> <p><u>③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u></p> <p><u>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u></p> <p><u><삭 제></u></p>
<u>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u>	
<u>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u>	

<p>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및 위치 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 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p>

6) 특정 사업자의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덧붙여, 위치정보 수집에 있어 핵심적인 설비·기능을 보유한 일정사업자에 대해 타 사업자가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개정안 제17조제1항). 위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및 그 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타 사업자가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 정보 제공 등)</u></p> <p>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제1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u></p> <p>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6조제1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p><u>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u></p> <p><u>3. 그 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u></p> <p>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p>
--	---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1) 위치정보산업 진흥에 대한 전반적 지원

위 개정을 통해 개정안 제1조, 제3조 및 제35조는 위치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갖추게 되어, 위치정보법의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부분에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었으나,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강구가 또 하나의 다른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중복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2) 변경신고 의무 완화

현행 법률의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속하여 최신 기술이 등장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시스템의 변경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정보산업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그렇기에 개정안 제5조제3항제3호에 대한 필 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다만, 관련 업계의 경우 1-2개 특정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10개 이상 사업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 사물의 위치를 다루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어 신고를 수시로 해야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라는 문구는 너무 불명확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이 현행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에서도 이미 의무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후 해설서 발간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아 지금과 같은 개정안이 되었다.

3) 관련 사업자 인적자원 부담 완화

현행 법률 제6조의 삭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종업원을 추가한 것인 만큼,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내부의 인적관리가 필요 하므로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위 법률이 종업원까지 인적통제를 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일일이 신원조회를 할 수밖에 없어 사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실태점검 등을 할 때에도 점검사항이 너무 많아져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기에 최종적으로는 삭제하자는 의견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처럼 임직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논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15년도에는 전해철 의원이 파산자 재기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윤한홍 의원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에서 복권한 파산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폭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결격 사유를 정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국회미래연구원법 등 234개 법률에

대해 자격 제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준비된 적이 있었다¹⁷⁾. 이러한 논의는 복권한 파산자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개정안에서 현행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제재규정 정비

별칙 규정은 형사처벌 위주의 너무 과도한 규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산업체의 경직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만약 너무 별칙이 경하다면 민감한 위치정보의 오·남용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그 균형추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그리하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별칙 중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규정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였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이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83조 4~6에서 세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¹⁹⁾.

17) 공감신문 기사, 윤정환 기자, 윤한홍 의원, ‘복권한 파산자’ 직업선택 폭 넓히는 개정안 발의, 2018.01.16., 출처:<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6136>; 한경 기사, 오형주 기자, 소싸움꾼도 못하는 ‘파산자’ 취업 제한 폐지 추진, 2021.8.8., 출처:<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089029i>

18) 제391회 국회 제7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 11. 90~91면.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N1V009E2Y8Q1D8V2C5_N4E9A0K8E2

19) GDPR Article 83 General condition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4. Infringements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up to 10 000 000 EUR, or in the case of an undertaking,

5) 관련 사업자의 위치정보주체 통보의무 완화

현행 제19조제3항과 제4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주체에게 매회 제공받는 자 등을 즉시 통보하라고 하면서,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최대 문제점은, 각종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위치정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즉시 통보하거나 30일 범위에서 모아 통보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자,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두 종류로 나누어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의무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경우(자발적으로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8세 이하 아동 등의 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되게 하였다. 그리고 제3항은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up to 2 % of the total worldwide annual turnover of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whichever is higher (an ellipsis)

5. Infringements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up to 20 000 000 EUR, or in the case of an undertaking, up to 4 % of the total worldwide annual turnover of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whichever is higher (an ellipsis)
6. Non-compliance with an order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as referred to in Article 58(2) shal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up to 20 000 000 EUR, or in the case of an undertaking, up to 4 % of the total worldwide annual turnover of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whichever is higher.

경우는 위치정보주체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제공에 대해 인지 가능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일종의 ‘알림문자 공해’가 될 수 있어 위와 같은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일부는 너무 과도한 고지라고 느낄 수 있으나, 위치정보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위치정보주체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이용에 대해 항상 알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추어, 향후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일단은 개정안과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되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에 위치정보의 “제공”이 포함되고,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이 삭제된 이상,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을 별도 규정에 의해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주체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상 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위치정보주체가 최소한 이를 인지를 할 수는 있게 해야한다는 견해가 우선하였다.

6) 특정 사업자의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위치정보사업에서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운영을 위해 타 사업자로부터 이를 제공 받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로 위치정보수집을 하는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현행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안 제17조제1항은 요청 받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자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이동통신사를 포함시키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OS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넣었다.

이에 대해 위치정보산업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견해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상황에 맞게 관련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입법 효과

위치정보법이 지금까지 위치정보주체의 보호에 좀 더 치우쳐왔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 전체적으로 위치정보주체의 보호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균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치정보산업계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치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보다 분명히 위치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관련 산업계에 윤활유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낼 것으로도 생각된다. 변경신고사항 완화와 사업자 인적자원 관리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의 통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련 사업의 현실과 부합하게 개정이 이루어져, 관련 법률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사업보장과 위치정보주체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위치정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해봄 직하다.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참고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71호)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 · 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 · 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 6의2. 삭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 ·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 · 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법 (법률 제18866호)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 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

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③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8518호)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4)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869호)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개선사항

가. 개정 이유

이번 과제에서 추진하였던 위치정보법 개정은 법률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전제적으로 건드리는 전부개정이다. 그렇기에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자, 정부기관 등에서 겪어온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통하여 위에서 논한 주요 사항들 외에도 여러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고, 수정을 가하였다.

나. 개정 내용

1) 직권 신고말소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개정안 제10조제2항). 이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휴·폐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가 말소 가능하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고만을 한 뒤 제대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 · 정지 등)</u>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 <u>위치정보사업자 등</u> ”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u>제10조(사업의 폐지 · 정지 등)</u> ① -- ----- <u>위치정보사업자 등이</u> ----- ----- ----- ----- <u>사업의</u>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	--

2)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이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이용약관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현행 법률 제21조의2는 관련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에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16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의 신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한 내용을 전부 위치정보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싣도록 하였다.

<신 · 구조문 대비표>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로 하거나, 위치정보주체가 제25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

2.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

③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

<p><u>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u></p> <p><u>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및 위치 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u></p>	<p><u>용·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u> <u>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u> <u>3.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u> <u>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p><u><삭 제></u></p>

3) 위치정보사업 수탁자 지위

단순히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 수탁자 지위를 규정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20조). 수탁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정의하고, 수탁자에 대해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치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0조(수탁자에 대한 준용규정) 수탁자(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수탁자”로 본다.

4) 실태점검 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 의무에 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개정안 제37조제3항). 기존 현행 법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할 필요 없이, 점검을 할 수 있다고만 하여 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자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구분이 통합되면서 위치정보사업자 규모가 수 천개에 이를 것이므로 더욱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이 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36조</u>(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 ·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 · 서류 및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16조제4항</u>을 준용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u>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개인위치정보사업자</u>에게 관계 물품 ·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 · 서류 및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이 경</p>	<p><u>제37조</u>(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u>제13조</u>-----.</p> <p>③ ----- <u>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u> ----- ----- ----- <u>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u>. ----- <u>위치정보사업자</u>----- ----- -----.</p> <p>④ ----- <u>실태 정기점검</u>----- ----- <u>위치정보사업자</u>----- ----- -----.</p>

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

5) 한국위치정보사업협회 활성화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종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만 위탁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신설하고(개정안 제40조제2항 본문),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확대하여(개정안 제40조제2항 제4호·제6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관련 산업계를 위해 더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생략)</p> <p>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p> <p>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p> <p>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p>	<p>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또는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3조-----</p> <p>-----</p> <p>-----</p> <p>-----</p> <p>2. 제22조-----</p> <p>-----</p> <p>3. -----</p>

<u>< 신 설 ></u>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 한다)	4. 제35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업무
<u>< 신 설 ></u>	5. 제37조-----	5. 제37조-----
		6. 기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위치정보 보호 등에 관한 업무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1) 직권 신고말소

개정안 제10조제2항의 직권 신고말소 조항은 정부의 사업자 통제 측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업자들이 위치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신고만 마치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 일선에서는 이를 적당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크게 강조되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이관

현행 법률 제21조의2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이용약관에 삽입하도록 한 위 개정은 관련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이용약관을 개인정보 동의문처럼 매번 변경 시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도록 한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이용약관 수시 변경 및 동의가 번번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 위치정보 처리 등과 관련된 동의문을 인정하여 동의문과 이용약관을 별개로 가져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위치정보주체의 보다 두터운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모습을 유지하되, 추후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려사항이 현

실화되면 추가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위치정보사업 수탁자 지위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게 수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던 현행 법률에 보다 관련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수탁자의 지위를 신설하였고, 그에 따른 수탁자의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제한 등 위·수탁자들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 수탁자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4) 실태점검 의무

개정안 제37조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연 1회라는 실태점검의 주기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서 표명되었다. 정부와 사업자 양측에서 실태점검 준비를 위해 과도하게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자주 있는 점검으로 인해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실태점검의 주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그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태점검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대상이 되는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보다 융통성 있게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국위치정보사업협회 활성화

개정안 제40조제2항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개정안이다. 각종 산업계에서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협회가 정부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위치정보산업은 그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현행 위치정보법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직접적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정작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개정안 제40조제2항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라. 입법 효과

개정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특정 요건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 말소 등이 가능해지므로 사업자들의 일단 사업자로 등록·신고부터 하는 등의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제된 사업자 명부가 마련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 등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행 법률 제21조의2 삭제와 그 내용을 이용약관에 실도록 한 것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까지 전부 신경쓰도록 한 부담을 완화시켜 사업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주체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자신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에 대해서는 위 개정을 통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태점검의 주기 등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안 제40조제2항을 통해서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그 밖의 참고사항

기타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869호)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제18198호)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전파법 (법률 제18522호)

제7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4차 산업혁명, 6G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전하게 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성항법, CCTV, AR, 5G, 사물인터넷, 메티버스와 같은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 중 특히 모빌리티 산업은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 부처에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번 정부가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간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진입 규제로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되거나, 소상공인등을 위한 1개월 신고 유예 제도 도입 등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연혁에서도 보여지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다.

금번 4차 산업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진입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 이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나누던 도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둘째,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위치정보법 내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규제하던 체계를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사물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셋째, 최근 측위 기술 발달로 인해 예전의 GPS와 같은 측위 기술이 아닌 CCTV, ATM, 카드 리더기 등에서도 기술 이용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게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사업 목적이 없음에도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였

다.

넷째,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 위치정보법의 목적을 보다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이밖에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임직원 결격 사유를 폐지하였고, 배달 및 콜택시 서비스 등에서 위치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와 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관련하여 즉시 통보, 고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별도로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위치정보 관련 제도 개편 정책방안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대 빼질 수 없는 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2.17.자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세대(6G) 위성통신기술 실증계획 발표,
2021.6.19.자 보도자료

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늘택시 뜬다] ②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2022년9월22일

뉴스핌, 이지민 기자, SKT-한화, KT-현대차, LGU+-GS…이통3사 UAM사업 짹짓기, 2022년9월19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2.,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책

고민정,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기술의 이해, 배움터, 2021.

유재학, 시대의 변화를 담은 미래교육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읽다, 2017.

배정철, 인공지능 시대의 주요 기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핵심기술, 육일문화사, 2022.

서성현, 모빌리티의 미래, 반니, 2022.

한국경제, “현대차 자율주행 협착사 ‘모셔널’, 일반도로 무인 자율 주행 ‘성공’”, 2021. 2. 23.

제17대 국회 제250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2004. 12. 6.).

방송통신위원회_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현황.

공감신문 기자, 윤정환 기자, 윤한홍 의원, ‘복권한 파산자’ 직업선택 폭 넓히는 개정안 발의, 2018.01.16.

오형주 기자, 소싸움꾼도 못하는 ‘파산자’ 취업 제한 폐지 추진, 2021.8.8.

제391회 국회 제7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 11.

[별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 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다만,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제외한다.
2. “위치정보주체” 라 함은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라 함은 위치정보의 주체(수집대상자), 수집일시·방법·경로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제공 서비스명, 이용·제공일시 및 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

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및 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상공인등이 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등(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은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휴업: 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폐업: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주체 및 위치정보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3.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위치

정보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 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2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 제12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제13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위치정보의 보호

제16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4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서비스(이하 “위치정보서비스”라 한다)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및 보유기간

6.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7.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8.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9. 그 밖에 위치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

2. 과거의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6조제1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3. 그 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다른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치정보 등의 수집 · 이용 · 제공의 제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 이용 ·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9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자의 이용 · 제공 제한)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제20조(수탁자에 대한 준용규정) 수탁자(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수탁자”로 본다.

제21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3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6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6조 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25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 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제26조(손해배상)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27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8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 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 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 라 한다)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 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 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 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5항에 따른 각각의 측위방식,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⑫ 제5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주체의 설정과 무관하게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받은 측위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제

조·공급하여야 한다.

제29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8조제1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8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8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8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그 요청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3항제3호 중 긴급구조와 관련된 표준이 고시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에 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

제36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8조(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또는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35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업무
5.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6. 기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위치정보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제4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또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별칙

제4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누설 · 변조 · 훼손 또는 공개한 자
2. 제16조 제1항 · 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19조(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8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8조제1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3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4조(별칙) 제22조제1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8
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
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
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
 8.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2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1. 제23조제4항(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3.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5. 제28조제1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요청받은 측위 방식에 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자
 16.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표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8.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2항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8조(적용범위) 이 법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특정 사람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0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각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자는 각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각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개인위치정보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 부분은 제외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저 자 소 개

이 광 육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아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 현 법무법인(유)화우 파트너 변호사

이 근 우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유)화우 파트너 변호사

이 수 경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 과정
- 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이 정 훈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강 석 준

- 고려대 국제학부 졸업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KCC-2022-17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2022년 12월 30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